

마이라이프 정기예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마이라이프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거래기본약관'과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예금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리금 지급식'은 예금기간 중 연단위로 매월 원리금을 균등하게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치후 원리금 지급식'과 '즉시 원리금 지급식'으로 구분합니다.
2. '거치후 원리금 지급식'은 예금기간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거치기간과 원리금 지급기간을 정하고 거치기간 경과후 원리금 지급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3. '즉시 원리금 지급식'은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지급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을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4. '거치기간'은 원리금 지급식의 경우 원리금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기간 예치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5. '원리금 지급기간'은 원리금 지급식의 경우 예금의 원리금을 지급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6. '만기지급식'은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7. '월이자지급식'은 매월 이자를 지급받고 예금의 만기일 이후 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제3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제 4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제 5 조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1 백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 6 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예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치후 원리금 지급식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0 년 이내 연단위로 합니다. 가입기간 중 거치기간은 1 년 이상 10 년 이내 연단위, 원리금 지급기간은 1 년 이상 29 년 이내 연단위로 합니다.
2. 즉시 원리금 지급식은 최장 30 년 이내 연단위로 합니다.
3. 만기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은 1 년으로 합니다.

제 7 조 이자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원리금 지급기간에는 월단위로, 이 외의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 ① 원리금 지급식의 이자는 가입일 또는 매년 가입일 해당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가입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고** 가입일 해당일이 없는 경우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② 만기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의 이자는 가입일 해당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 8 조 예금의 지급방법

이 예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치후 원리금 지급식은 거치기간과 원리금 지급기간으로 구분합니다.

가. 거치기간에는 가입일 또는 매년 가입일 해당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를 매년 가입일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고 가입일 해당일이 없는 경우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나. 원리금 지급기간에는 가입일 또는 매년 가입일 해당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원리금 균등액을 매월 가입일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고 가입일 해당일이 없는 경우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2. 즉시 원리금 지급식은 제 8 조 제 1 항 제 2 호의 거치후 원리금 지급식의 원리금 지급기간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3. 만기지급식은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합니다.

4. 월이자지급식은 매월 약정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예금의 만기일 이후 원금을 지급합니다.

5.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원리금 또는 이자는 가입일 및 매년 가입일 해당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연단위로 재산정하여 지급합니다.

6. 예금의 지급방법은 가입시 선택하여야 하며 만기지급식에서 월이자지급식으로만 중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7. 질권설정 및 압류, 법적지급제한 등 지급이 제한된 계좌는 원리금 또는 이자 지급이 불가합니다. 지급의 제한으로 미지급된 금액은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 도래하는 최초 원리금 지급일에 일괄 지급합니다. 다만, 거래처의 요청시에는 지급의 제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중도해지

거래처가 만기일 이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치후 원리금 지급식은 거치기간과 원리금 지급기간으로 구분합니다.

가. 거치기간에는 1 년 미만 경과시 거래처가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가입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거래처가 1 년 단위 경과후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연단위 경과분은 제 7 조 제 2 항에서 정한 이율로,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최종이율변경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각각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나. 원리금 지급기간에는 제 7 조 제 2 항에서 정한 이율로 셈하여 이미 지급한 원리금에 대해서는 환입하지 않고 잔여원금에 대해서만 최종이율변경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2. 즉시 원리금 지급식은 제 9 조 제 1 항 제 2 호의 거치후 원리금 지급식의 원리금 지급기간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3. 만기지급식은 가입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4. 월이자지급식은 가입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제 10 조 만기후해지

거래처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리금 지급식은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종이율변경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2. 만기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은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11 조 일부해지

- ① 이 예금은 최종 해지분을 포함하여 3 회 범위내에서 일부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 지급식의 원리금 지급기간에는 일부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② 만기일 이전에 일부해지 하는 경우 일부해지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은 제 9 조 제 1 항제 1 호, 제 3 항, 제 4 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③ 일부해지후 잔액은 1 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12 조 갱신

- ① 이 예금은 거래처가 만기일 이전에 갱신 신청하는 경우 만기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자동갱신 처리합니다. 다만, 원리금 지급식은 자동갱신 처리가 불가합니다.
- ② 만기일 이후에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 10 조 제 2 항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하고 갱신 처리합니다.
- ③ 갱신된 예금의 이자는 갱신된 날을 가입일로 하여 제 7 조 제 3 항 및 제 9 조 제 3 항, 제 4 항에 따라 적용이율을 정합니다.

제 13 조 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 금지

이 예금은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장기의 예금으로 계약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우대서비스의 제공

- ① 원리금 지급식으로 가입하고 자동이체 방식을 통하여 거래처 명의의 당행계좌로 원리금을 입금받는 경우 아래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이 서비스의 내용은 은행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내용 변경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 관련 내용을 은행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1 개월간 게시합니다.
- ③ 우대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 : 거래시점 기준 과거 3 개월 이내 원리금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가입자
 2. 우대내용
 - 원리금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입금받는 계좌에서 인출 또는 이체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우대합니다.
 -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 가) 우대서비스 대상인 경우 인터넷(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 월 10 회 면제
 - 나) 우대서비스 대상이고 최근 3 개월간 하나신용카드 결제실적이 90 만원 이상인 경우 인터넷(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 CD/ATM 이용수수료 면제 : 당행 CD/ATM 을 이용한 당행계좌의 마감후 당행이체 및 마감후 인출시 수수료 면제. 타행이체는 면제가 안 됨.
 - 외화현찰(지폐) 매입/매도, TC 매입/매도, 외화 당발송금시 30% 환율우대

부칙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 년 6 월 7 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